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
----------	-----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10일

발 의 자 : 이광성, 김용석, 장상기, 김정환,
김경영, 이광호, 문장길, 문영민,
최정순, 김생환, 김제리, 송명화,
김기덕, 유정희, 송정빈, 김태수,
황인구, 경만선, 김광수, 박상구
의원(20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0명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하절기”를 “여름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절기”를 “겨울철”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시설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p> <p>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p> <p>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30명 이 내 ----- ----- ----- ----- ----- 2명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온도관리기준) ----- ----- -----.</p> <p>1. 여름철 ----- ---</p> <p>2. 겨울철 ----- ---</p> <p>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다음 각 호에 ----- -----.</p> <p>1. <u>베란다형 태양광 설비</u></p> <p>2. <u>주택형 태양광 설비</u></p> <p>3. <u>건물형 태양광 설비</u></p> <p>4. <u>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u></p>